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846
----------	-------

제안연월일 : 2026. 8.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83	김성원의원	2025. 2. 4.	제429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		2209250	허종식의원	2025. 3. 21.	제429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3		2214444	최혁진의원· 김동아의원	2025. 11. 20.	제433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3.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가.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 5. 20.)에
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
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자활기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 ----- ----- ----- ----- ----- ----- ----- ----- ----- ----- ----- ----- ----- ----- 1. ~ 5. (생략)
<신설>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설>	

<u><신 설></u>	<u>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u>
	<u>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